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5월 1일, 권칠승의원 등 11인

나. 회 부 일 자: 2025년 5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9.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9.1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9.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권칠승의원)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위탁거래에 관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나 분쟁 조정 요청에 따른 조사를 하고, 위법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개선 요구, 시정명령 및 공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 개선 요구 및 시정명령의 제척기간이 없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수탁·위탁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탁·위탁거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실태조사를 개시한 날 또는 분쟁조정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개선 요구나 시정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수탁·위탁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성소미)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의2를 신설하여 수탁·위탁거래가 종료된 지 3년이 경과한 건에 대해서는 동법

제27조제1항[1]에 따른 조사개시를 할 수 없도록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사개시에 제척기간이 없는 경우 거래가 종료된 지 3년이 초과된 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고 수탁·위탁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조사개시의 대상이 되는 수탁·위탁거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됨.

참고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제23조[2]에서도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에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있는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동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하도급법」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개시 제척기간을 7년으로 늘려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조항 신

---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①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2조의3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되거나 제24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설시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 위반[3]과 기술자료 유용행위[4]에 대한 조사개시 제척기간은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당초 「하도급법」에서는 조사대상의 유형에 관계없이 조사개시 제척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는 ① 통상 그 행위가 은밀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법 위반이 즉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5], ② 거래 직후가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큰 측면 등을 고려하여 국회는 2018년 3월 30일 의결을 통해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조사개시의 제척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였음.

둘째, 개정안에는 '거래가 끝난 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23조제2항[6]과 「대·중소

---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수탁기업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및 범위
2.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정한 수탁·위탁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준수사항)② 위탁기업은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수탁사업자는 위탁사업자가 유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상당기간을 거쳐 제품화를 한 이후에야 기술유용에 따른 피해사실을 인지할 수 있음.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7]의 거래유형 등을 참고하여 거래의 종료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은 제척기간의 예외로,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법 제28조제1항[8]에 따른 분쟁조정 요청[9]이 제기된 경우' 거래가 종료된 지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피해구제 목적을 가진 '동법 제28조의9제1항[10]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의 조정을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도 제척기간에 대한 예외로 인정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② 제1항에서 "거래가 끝난 날"이란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분쟁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9) 개정안에서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로 표현하고 있는데, 현행 법 문언상 표현인 '요청'으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임.

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①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루어지는 경우, ② 동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요청을 받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분쟁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그리고 동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도록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한편,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선 요구 또는 시정명령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이는 3년 이상 장기간 이어지는 조사와 분쟁조정으로 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로 이해되고, 「하도급법」 제22조제4항[11]에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법 개정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5년 7월말 기준으로 처리가 진행 중인 60건의 신고 사건 중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가 개시

---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

된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시정명령 등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는 3건으로 파악되고 있음.

개정안 부칙에서는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조사에 대한 개선요구와 시정명령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3년 내에 내릴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해당 기간 내에 신속히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선 요구 또는 시정명령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것과 관련하여,

예외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처분이 취소되고 재판 과정에서 거래 종료시부터 3년이 경과되면 다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행위와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예외규정은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동법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취소된 행정처분에 개선요구와 시정명령 외에 시정권고를 추가하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12)]

12) 또한 안 제27조의2제3항의 개선요구는 법 문언상 표현인 시정권고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대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폐기)